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2

2021년 8월 3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0일, 송정빈 의원 외 42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송정빈 의원)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로 되어 있는 조례의 용어를 한글화하고,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 역시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함.

○ 어문 규정에 맞게 길고 간결한 문장은 정비하고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 역시 바꾸어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함

○ “면제”를 “감면”으로 통일함(안 제14조제2항 ~ 제4항)

○ “유어행위”에 대해 한자를 병기함(안 제17조제1항제15호 및 제18조제1항)

○ 조례 전체 문맥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1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재효)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 등을 바꿈과 동시에 조례 전체 문맥에 맞게 주요 용어를 통일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접근도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기준과 표준 맞춤법 및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 전체 문맥에 맞게 주요 용어를 통일[1]하고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에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17조제1항제15호, 제18조 중 유어행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유어행위의 한자(游魚行爲)를 병기하고자하나, 상위법령인 「수산어법」 제2조제19호에서 유어행위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한자를 물고기어(魚)가 아닌 고기잡을 어(漁)로 병기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에서도 같은 한자를 병기하고 있음.

유어행위에 대한 한자어가 '물고기 어(魚)'와 '고기 잡을 어(漁)' 가 혼용되고 있고 그 의미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현행 법령구조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국어대사전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

1) 면제, 감면 → 감면

○ 또한, 안 제23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 ‘자(者)’를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나 한강시민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 검토, 심의·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나 연구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개인과 단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유어행위의 한자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와 다르고 회의에 필요한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個人)뿐만이 아닌 단체가 될 수 있어 이를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통일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62

제안년월일 : 2021년 8월 31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유어행위의 한자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와 다르고 회의에 필요한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個人)뿐만이 아닌 단체가 될 수 있으며 일부 용어역시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골자

○ 유어행위의 한자를 '游漁行爲'로 함(안 제17조제1항제15호 및 제18조제1항)

○ "면제"를 "감면"으로 통일함 (안 제20조제2항)

○ 내용 중 '자'가 개인뿐만 아닌 단체를 의미할 경우 현행대로 함(안 제23조제5항)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1항제15호 및 제18조 중 “유어행위(遊魚行爲)”를 “유어행위(遊漁行爲)”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 중 “면제 받은 자에게”를 “감면 받은 자에게”로, “면제 받은 금액”을 “감면 받은 금액”으로 한다.

안 제23조제5항 중 “사람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금지행위)** ① ---------- 구역 내----------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금지행위)** (개정안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 ---------- 것만 해당한다 ----------	3. (개정안과 같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4. ~ 9. (개정안과 같음)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 ---------- 그러지 않다.	10. (개정안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1. ~ 14. (개정안과 같음)
15.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15. ---------- 유어행위(遊魚行爲)	15. ---------- 유어행위(遊漁行爲)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유어행위 금지) ① 시장은 한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와 한강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18조(유어행위 금지)** ① ---------- ---------- ----------	**제18조(유어행위 금지)** ① ---------- ---------- ----------

어로,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유어행위(遊魚行爲)는 ----------.	---- 유어행위(遊漁行爲)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하여야 하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생 략)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의 이용료 징수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제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면제 받은 자에게---------- 면제 받은 금액----------.	② ---------- 감면 받은 자에게---------- 감면 받은 금액----------.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 등은 ----------.	③ (개정안과 같음)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해당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1 이상 ----------	3. (개정안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회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사람, ---------- 사람에게 ----------.	⑤ ----------사람, ---------- 자에게 ----------.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 서울특별시의회 ----.	⑥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한강수계내”를 “한강수계 내”로 한다.

제5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부합되도록”을 “일치하도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 “자에게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을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범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감면 등에 관하여”를 “이용료 감면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취소하는”을 “취소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실비수준”을 “실제 비용 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에 대하여”를 “단체에게”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역내”를 “구역 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것에 한한다”를 “것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유어행위”를 “유어행위(遊漁行爲)”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유어행위에 대하여”를 “유어행위(遊漁行爲)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자는 단속전”을 “사람은 단속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곤란한”을 “어려운”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를 “감면 받은 자에게”로, “면제 받은 금액”을 “감면 받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가격범위 내”를 “가격범위”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를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을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원”을 “공무원인 위원”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를 “그 직위에”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모든 사항----------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행정관할에 속하는 한강 본류의 수역 및 둔치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2. ~ 4. (생 략)	**제3조(정의)**----------. 1. ---------- ---------- ----------한강수계 내 ---------- --------.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공원의 보전과 시민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 ---------- ---------- ---------- 마련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정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② ----- 따른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한강공원 백서) ① (생 략)	**제10조(한강공원 백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 ① (생 략)	**제11조(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집정보의 공개는 제10조에 의한 한강공원 백서에 포함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② ---------- 따른 ----------.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을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일치하도록 ----------.
제14조(이용료)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① ---------- 자에게는 ---------- 범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감면---------.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범위는 ----------.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용료 감면 등은 ----------.
⑤ 제1항에 규정된 이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⑤ ------ 따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⑦ -------- 취소할 --------.
제15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생 략)	**제15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시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실제 비용 수준----------.
③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 ---- 단체에게 ---------- ---------- 범위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따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단체가 한강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 따른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금지행위)** ① ---------- -- 구역 내---------- 해서는 안 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 ---------- 것만 해당한다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 ---------- ---------- ---------- 그러지 않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15. ---------- 유어행위(遊漁行爲)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유어행위 금지) ① 시장은 한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와 한강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로,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유어행위 금지)** ①---------- ---------- ---------- ---------- 유어행위(遊漁行爲)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하여야 하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생 략)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자는 단속전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	② ---------- 사람은 단속 전 ----------.
③ 제1항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제17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다	③ ------- 따라 ---------- ----------. ------

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어려운 ----------.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생 략)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의 이용료 징수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제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감면받은 자---------- 감면----------.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 등은 ----------.
제21조(폐기물 처리) ① ~ ③ (생략)	**제21조(폐기물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
⑤ 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별표 4의 한강공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⑤ -------- 따른 ---------- 가격범위----------.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시장은 한강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에 의한 단체와 협력방안	4. ------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사람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원환경·생태·자연성 회복·수상·도시계획·경관·문화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 그 직위에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 1 이상----------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⑤ ---------- ----------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람, ----------.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 서울특별시의회----------.